

國會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176
----------	------

제안연월일 : 2005. 6. 29

제안자 : 국회개혁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가. 2004년 5월 3일 여·야 대표의 협약에 따라 2004년 6월 5일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국회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여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함.

나. 제248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04.7.8)에서 예결위내실화를 위한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50회국회(정기회) 제5차 위원회(2004.9.20)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3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개혁방안을 논의함. 예결위내실화를위한소위원회에서는 국회법중 예산결산심의제도에 관한 사항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입법절차, 국회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등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는 의원, 대정부관계 등을 그 소관업무로 하여 관련 안건을 심사함.

다. 예결위내실화를위한소위원회에서는 예결위 상임위화 등 국회 예·결산 심사 절차 내실화에 관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하여 총 6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제6차회의(2005.6.16)에서 소위원회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국회개혁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입법절차, 국회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및 입법지원조직에 관한 36건의 법률안(국회법 32건, 국회사무처법 2건, 국민고충처리에관한법률안 1건, 음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1건)의 심사를 위하여 총 5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제5차회의(2005.6.13)에서 소위원회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국회개혁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마.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의원, 대정부관계, 국정감·조사 및 인사청문회에 관한 35건의 법률안(국회법 21건, 인사청문회법 7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3건,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법률 2건,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2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총 5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제5차회의(2005.6.13)에서 소위원회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국회개혁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바. 국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관계법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예결위 상임위화에 관한 공청회(2004.7.8), 국회관계법 개정에 관한 공청

회(2005.4.28) 등 2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사. 2005년 6월 20일 제254회국회(임시회) 제10차 국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3개 소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총 4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17대 국회 출범 이후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 헌법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확대하도록 하여 국회의 대정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의원석방요구안의 요건을 강화하여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방지하며,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를 의무화하여 국회의 예결산 심사기능을 내실화하는 등 강한 국회, 열린 국회, 정책 국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정부가 국회에 의원체포동의를 요청한 경우,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 나. 의원석방요구안의 발의요건을 현행 의원 20인 이상에서 재적의원 4분의 1로 강화함(안 제28조).
- 다.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처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산업자원위원회로 소관을 이관하고, 기타 국회법에 그 소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임위원회 소관부처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37조).
- 라.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 마. 정보위원회에서 공청회·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
- 바. 소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이를 해당 소위원회로 바로 회부하여 병합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 사.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기 이전의 최소 계류기간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로 확대함(안 제59조).

아. 전원위원회의 심사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63조의2).

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국무위원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65조의2 및 부칙 제2조).

차. 소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도 속기방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을 의무화함(안 제69조).

카.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79조의2 신설).

타.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의장이 그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

파. 기획예산처 소관 법률안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3조의2 신설).

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개최를 의무화 하도록 함(안 제84조의3 신설).

거. 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예고를 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법예고안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검토결과 통보에 대한 행정부의 사후 결과보고 절차를 마련함(안 제98조의2).

너. 대정부질문시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하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 추가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2조의2).

더. 윤리심사 및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였던 것을 10일 이내에 하도록 그 시한을 연장함(안 제157조제2항).

러. 윤리특별위원회는 3월내에 윤리심사를 종료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3월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7조제3항).

머. 의원은 자기에 대한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의 심사에 있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0조).

國會議法 일부개정법률안

國會議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國會議法”을 “국회법”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 중 1주(週)는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

제21조제5항중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제28조중 “20人이상”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단서중 “第3條 但書”를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대통령비서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사. 대통령경호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7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가인권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부패방지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7조제1항제4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제37조제1항제7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중앙인사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7조제1항제12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7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9조제1항중 “된다”를 “될 수 있다”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42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중

“第3項”을 “제4항”으로 한다.

②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4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8조제1항 후단중 “그 任期滿了日 전 3日이내에”를 “그 임기만료일 3일전까지”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7조제2항중 “3개의 常設小委員會를 둔다”를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58조제4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단서 및 제6항(중전의 제5항) 본문중 “全文改正法律案”을 각각 “전부개정법률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중 “第4項 但書 및 第5項”을 “제5항 단서 및 제6항”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중

인 안전과 직접 관련된 안전이 위원회에 새로이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 본문중 “15일”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로 한다.

제63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제64조제1항 단서중 “全文改正法律案”을 “전부개정법률안”으로, “第58條第5項”을 “제58조제6항”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단서중 “全文改正法律案”을 “전부개정법률안”으로, “第58條第5項”을 “제58조제6항”으로 한다.

제65조의2제2항중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을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와 대법원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소관상임위원회별로”를 “각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로 한다.

제6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제7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제77조 전단중 “議事日程의 順序를 變更하거나 다른 案件을 議事日程에 추가할 수 있다”를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7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중 “全文改正法律案”을 “전부개정법률안”으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

제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0조의 제목 “(國會公報 및 立法現況報의 발간)”을 “(국회공보의 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중 “國會公報와 立法現況報”를 “국회공보”로 한다.

제8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해당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①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협의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소관위원회는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법률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④소관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3(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5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9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의2제3항(중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중 “第2項”을 “제3항”으로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제122조의2 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전단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8조(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①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의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를 위하여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자는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7조제2항 본문중 “5日”을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제156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

심사회부가 있거나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월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0조(변명)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제16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이 법 및 제1항의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전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

에 의한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 국무총리후보자”를 각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國會議法</u>	<u>국회법</u>
第5條의2(年間 國會運營基本日程 등) ① (생 략)	第5條의2(年間 國會運營基本日程 등) ① (현행과 같음)
②第1項의 年間 國會運營基本日程은 다음 各號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②-----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會期는 週單位로 운영하되, 月曜日부터 水曜日까지는 委員會 활동을, 木曜日は 本會議 활동을 한다. 다만,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臨時會의 會期中 1週는 政府에 대하여 質問을 행한다.</u>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 중 1주(週)는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
第21條(國會事務處) ① ~ ④ (생 략)	第21條(國會事務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國會事務處는 國會의 立法 및 豫算決算審査등의 活動을 지원함에 있어 議員 또는 委員會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資料 등을 <u>제공할 수 있다.</u>	⑤----- ----- ----- ----- -----제공하여야 한다.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第26條(逮捕同意要請의 節次) 議員을 逮捕 또는 拘禁하기 위하여 國會의 同意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管轄法院의 判事는 令狀을 발부하기 전에 逮捕同意要求書를 政府에 제출하여야 하며, 政府는 이를 受理한 후 지체없이 그 寫本을 첨부하여 國會에 逮捕同意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第26條(逮捕同意要請의 節次) ①----- ----- ----- ----- ----- ----- ----- ----- -----.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第28條(釋放要求의 節次) 議員이 逮捕 또는 拘禁된 議員의 釋放要求를 發議할 때에는 20人이상의 連署로 그 이유를 첨부한 要求書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28條(釋放要求의 節次) -----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 --.
第29條(兼職) ①議員은 政治活動 또는 兼職을 금지하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각	第29條(兼職) ①----- ----- -----

號의 1에 해당하는 職을 제외한 다른 職을 겸할 수 있다. 1. 國家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國家公務員法 第3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政治運動이 허용되는 公務員은 제외한다. 2. ~ 6. (생략) ② ~ ⑤ (생략) 第37條(常任委員會와 그 所管) ① 常任委員會와 그 所管은 다음과 같다. 1. 國會運營委員會 가. ~ 마. (생략) <신설> <신설> 2. 法制司法委員會 가. ~ 마. (생략) <신설>	----- -----. 1. ----- ----- ----- -----제3조 제3항----- ----- -----.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37條(常任委員會와 그 所管) ① ----- -----. 1. 國會運營委員會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u>대통령비서실소관에 속하는 사항</u> 사. <u>대통령경호실소관에 속하는 사항</u> 2. 法制司法委員會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u>국가인권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u>
--	--

<신 설>

바. · 사. (생 략)

3. (생 략)

4. 財政經濟委員會

가. (생 략)

<신 설>

나. (생 략)

5. · 6. (생 략)

7. 行政自治委員會

가. (생 략)

<신 설>

나. · 다. (생 략)

8. ~ 11. (생 략)

12. 産業資源委員會

산업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 설>

13. ~ 16. (생 략)

17. 女性委員會

사. 부패방지위원회소관에 속

하는 사항

아. · 자. (현행 바목 및 사목

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財政經濟委員會

가. (현행과 같음)

나.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다. (현행 나목과 같음)

5. · 6. (현행과 같음)

7. 行政自治委員會

가. (현행과 같음)

나. 중앙인사위원회소관에 속

하는 사항

다. · 라. (현행 나목 및 다목

과 같음)

8. ~ 11. (현행과 같음)

12. 産業資源委員會

가. (현행과 같음)

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소관

에 속하는 사항

13. ~ 16. (현행과 같음)

17. 여성가족위원회

<u>女性部所管에 속하는 사항</u>	<u>여성가족부소관에 속하는 사항</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第39條(常任委員會의 委員) ①議 員은 2 이상의 常任委員會의 委員(이하 "常任委員"이라 한다)이 된다.	第39條(常任委員會의 委員) ①--- ----- ----- 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 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第42條(專門委員과 公務員) ① (생략)	제42조(專門委員과 公務員)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 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야 한다.
②·③ (생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專門委員은 第3項의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政府·行政機關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요청은 委員長의 許可를	⑤-----제4항----- ----- ----- ----- -----

언어 委員長名義로 하여야 한다.	----- --.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第44條(特別委員會) ①・② (생 략)	제44조(特別委員會) ①・② (현행과 같음)
③特別委員會는 活動期限의 종료시까지 存續한다. 다만, 活動期限의 종료시까지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報告書を 제출한 경우에는 審査한 案件이 本會議에서 議決될때까지 存續하는 것으로 본다.	③----- ----- .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第48條(委員의 選任 및 改選) ① 常任委員은 交渉團體所屬議員數의 比率에 의하여 각 交渉團體代表議員의 요청으로 議長이 選任 및 改選한다. 이 경우 각 交渉團體代表議員은 國會議員總選舉후 최초의 臨時會의 集會日부터 2日이내에 그리고 國會議員總選舉후 처음 選任된 常任委員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第48條(委員의 選任 및 改選) ①- ----- ----- ----- ----- . ----- ----- ----- ----- ----- ----- 그

任期滿了日전 3日이내에 議長에게 委員의 選任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期限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議長이 委員을 選任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第54條의2 (情報委員會에 대한 特例) ①情報委員會의 會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략) 第57條(小委員會) ① (생략) ②常任委員會(情報委員會를 제외한다)는 그 소관사항을 分擔·審査하기 위하여 3개의 常設小委員會를 둔다. ③ ~ ⑧ (생략) 第58條(委員會의 審査) ①~③ (생략) <신설>	임기만료일 3일전까지----- -----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情報委員會에 대한 特例) ①----- ----- .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57條(小委員會) ① (현행과 같음) ②----- -----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第58條(委員會의 審査) ①~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	--

	<u>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이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u>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逐條審査는 委員會의 議決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制定法律案 및 <u>全文改正法律案</u>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 --- <u>전부개정법률안</u> ----- -----.
⑤委員會는 制定法律案 및 <u>全文改正法律案</u> 에 대하여는 公聽會 또는 聽聞會를 開催하여야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u>전부개정법률안</u> ----- ----- ----- -----.
⑥ · ⑦ (생략)	⑦ · 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⑧第4項 但書 및 第5項의 規定은 法制司法委員會의 體系·字句審査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5항 단서 및 제6항----- ----- ----- -----.
第59條(法律案의 上程時期) 委員會는 發議 또는 제출된 法律案	第59條(法律案의 上程時期) ----- -----

이 그 委員會에 회부된 후 15일 (法制司法委員會의 體系・字句 審査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 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議事日 程으로 上程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委員 會의 議決이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u>일부개</u> <u>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u> <u>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u> <u>경우에는 20일</u>----- ----- ----- ----- -----.
第63條의2(全院委員會) ① ~ ④ (생 략) <u>⑤全院委員會는 계속하여 2日이</u> <u>내 1日 2時間의 범위내에서 議</u> <u>案에 대한 審査를 할 수 있다.</u> <u>이 경우 議員의 發言時間은 5分</u> <u>이내로 한다.</u>	第63條의2(全院委員會)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⑥ (생 략) 第64條(公聽會) ①委員會(小委員 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중요한 案件 또는 專門 知識을 요하는 案件을 審査하기 위하여 그 議決 또는 在籍委員 3分の 1이상의 요구로 公聽會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學識・經 驗이 있는 者등(이하 "陳述人"	⑥ (현행과 같음) 제64조(公聽會) ①----- ----- ----- ----- ----- ----- -----

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다만, 制定法律案
및 全文改正法律案의 경우에는
第5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다.

② ~ ⑤ (생략)

第65條(聽聞會) ① (생략)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法律案의 審査를 위한 聽聞會의 경우에는 在籍委員 3分の 1이상의 要求로 開會할 수 있다. 다만, 制定法律案 및 全文改正法律案의 경우에는 第5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다.

③ ~ ⑧ (생략)

第65條의2(人事聽聞會) ① (생략)

②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 · 국세청장 · 검찰
총장 또는 경찰청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에
는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
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
청문회를 연다.

--전부개정법률안

제58조 제6항-----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5조(聽聞會)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부개정법

물안 제58조제6항

③ ~ ⑧ (현행과 같음)

第65條의2(人事聽聞會)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위원 · 국무위원 · 국가
정보원장 · 국세청장 ·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와 대법
원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헌법
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

③(생 략) 第69條(委員會會議錄) ①委員會는 委員會會議錄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 2 (생 략) 3. <u>出席委員의 姓名</u> 4. ~ 11. (생 략) ② . ③ (생 략) ④小委員會의 會議錄에 관하여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u>다만, 小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때에는 議事에 관하여 速記方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요지를 구체적으로 記錄할 수 있다.</u> 第76條 (議事日程의 작성) ① (생 략) ②議長은 <u>開議日時・附議案件과 그 順序를 기재한 議事日程을 작성하고 늦어도 本會議開議 前</u>	<u>리위원회 위원</u>----- ----- ---<u>각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u>----- -----. ③ (현행과 같음) 第69條(委員會會議錄)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u>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u> 4. ~ 1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단서 삭제></u>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 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
--	---

일까지 本會議에 보고한다. 그러나 再開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議事日程의 작성에 있어서는 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신 설>

④ (생 략)

第77條(議事日程의 變更) 議員 20인이상의 連署에 의한 動議로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議長이 각 交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議長은 議事日程의 順序를 變更하거나 다른 案件을 議事日程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議員의 動議에는 理由書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動議에 대하여는 討

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

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	-----.
第79條(議案의 發議 또는 제출)	第79條(議案의 發議 또는 제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議案을 發議하는 議員은 그 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贊成者와 連署하여 이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豫算上의 措置가 隨伴하는 法律案 기타 議案의 경우에는 豫算明細書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議員이 發議한 法律案중 國會에서 議決된 制定法律案 또는 全文改正法律案을 公表 또는 弘報하는 경우에는 당해法律案의 副題를 함께 表記할 수 있다.	④----- ----- 전부개정법률안----- ----- -----.
<신 설>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 ①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u>②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u> <u>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u>
第80條(國會公報 및 立法現況報의 발간) ①・② (생략) <u>③議長은 매 會期初 및 會期中 議案의 發議, 審査經過등 議員의 立法活動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立法現況報를 발간하여 議員에게 주기적으로 配付한다.</u> <u>④國會公報와 立法現況報의 발간 및 配付 기타 필요한 사항은 議長이 정한다.</u>	第80條(국회공보의 발간)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u>④국회공보</u>----- ----- -----.
第81條(常任委員會 回附) ①・② (생략)	第81條(常任委員會 回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생 략)

<신 설>

③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해당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①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20일의 범위 이내에 협의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

<신 설>

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소관위원회는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법률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④소관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의3(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

第85條(審査期間) ①議長은 審査期間을 정하여 案件을 委員會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議長은 각 交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第98條의2(大統領令등의 제출등)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法律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한 大統領令・總理令・部令・訓令・例規・告示등이 制定・改正 또는 廢止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國會 所管常任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간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所管常任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5조(審査期間) ①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현행과 같음) 제98조의2(大統領令등의 제출등) ①----- ----- ----- ----- ----- ----- ----- ----- -----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
--	--

②常任委員會는 委員會 또는 常設小委員會를 정기적으로 開會하여 그 소관 中央行政機關이 제출한 大統領令・總理令 및 部令(이하 이 條에서 "大統領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法律에의 위반여부 등을 檢討하여 당해 大統領令등이 法律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專門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등을 檢討하여
그 結果를 當해委員會 委員에
게 제공한다.

第115條(會議錄) ①國會는 會議錄

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
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
야 한다.

③-----

-----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
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

第115條(會議錄) ①-----

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出席議員의 數</u>	3. <u>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u>
4. ~ 19. (생략)	4. ~ 19.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122條의2(政府에 대한 質問) ① (생략)	第122條의2(政府에 대한 質問) ① (현행과 같음)
②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 ----- ----- -----.
<신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 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 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 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의장은 제3항에서 규정한 의 제별 질문의원수를 교섭단체별 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 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	⑤ ----- 제4항----- ----- ----- -----

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 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 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⑦ (생 략)	----- ----- ----- ⑥~ ⑧ (현행 제5항 내지 제7 항과 같음)
第148條(喫煙등의 금지) ①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議場 안에서 飲食이나 喫煙을 할 수 없으며, 議案과 관련없는 新 聞・雜誌 기타 刊行物등을 閱讀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議場 안에서 携帶電話機를 사 용하여서는 아니되며, 本會議의 會議場 안에서 個人携帶컴퓨터 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8조(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 회의진행 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 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第149條(중계방송 등)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로 公開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會議場 안(本會議場은 傍聽席에 한하 다)에서의 錄音・錄畫・撮影 및 中 繼放送을 國會規則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①국 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 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의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 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 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상업

②第1項의 錄音 등을 하는 者는 會議場의 秩序를 亂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國會는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事進行을 音聲 또는 影像으로 完전한 상태를 放送할 수 있도록 그 制度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國會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설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放送을 위하여 필요한 制度를 國會規則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은 政治的 目的이나 商業的 目的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⑤國會運營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에 대한 基本原則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審議하며, 이를 위하여 放送審議小委員會를 둔다.

<신 설>

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③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를 위하여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u>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u> <u>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u> <u>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u> <u>②제1항의 녹음·녹화·촬영 및</u> <u>중계방송을 하는 자는 회의장의</u> <u>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u> <u>된다.</u>
第157條(倫理審査 및 懲戒의 요구 또는 회부의 時限등) ① (생 략) ②第1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長의 倫理審査對象者 또는 懲戒對象者 보고와 同條 第3項· 第4項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倫理審査要求 또는 懲戒要求는 그 事由가 발생한 날, 그 對象 者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閉會期間중에 그 對象者가 있을 경우에는 次回國會議의 集會日부 터 3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倫理特別委員會는 第156條第1 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倫理審査回附가 있거나 同條第6	第157條(倫理審査 및 懲戒의 요구 또는 회부의 時限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 ----- ----- ----- ----- ----- ----- 10일-----. ----- ----- ----- -----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제156조제1 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회부가 있거나 같은 조

<u>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가 있는 날부터 3月내에 그 審査를 종료 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그 審査를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案件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u>	<u>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 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월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u>第160條(辨明) 議員은 자기의 倫理審査案 또는 懲戒案에 관한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출석할 수 없으나 스스로 辨明하거나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辨明하게 할 수 있다.</u>	<u>제160조(변명)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u>
第166條(規則制定) (생략) <u><신설></u>	第166條(規則制定) ① (현행과 같음) <u>②위원회는 이 법 및 제1항의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전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u>